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633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토록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4조에 규정한 존속기한 변경
 -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5013, FAX: 3396-8670, 메일: kimmj5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4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p>